

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운영 내규

제정 : 2018. 3. 2.

개정 : 2025. 12. 10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일어일문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제2조(적용범위와 효력)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석·박사과정에 적용되며,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

제2장 입학관리

제3조(우수학생의 유치) 일어일문학과 소속 교수들을 일어일문학과 석·박사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.

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

제4조(교육과정)

- 일어일문학과는 일본어학, 일본문학, 일본문화의 전공 과정을 가진다.
- 석사과정은 전공 24학점과 연구지도 9학점을 이수해야 하며, 박사과정은 전공 36학점과 연구지도 9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
- 동일 과정 내 동일 교과목을 이수하면 학점 인정 처리가 불가하다.

제5조(과목개설) 과목개설은 전공별 교육과정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며, 2개년도 이내에는 동일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는다.

제6조(교강사 배정)

- 개설 교과목의 교강사 배정은 전임교수 간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.
- 교강사를 배정할 때 전임교원을 우선으로 한다.
- 전임교원의 연구년이 되거나 수강생이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강사를 배정할 수 있다.

제4장 논문지도

제7조(지도교수의 선정)

- 지도교수 신청서는 석·박사과정 입학 후 첫 번째 학기 말에 제출한다.
- 지도교수의 선정 시 본인의 전공 및 연구 주제에 맞는 지도교수를 선정한다.
- 지도교수를 선정할 때 반드시 해당 교수와 면담을 진행한 후 신청서를 제출한다.

제5장 자격시험

제8조(종합학력시험 면제 기준) 대학원 종합학력시험의 면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
2018.01.30. 개정 2025.12.10.>

학과	과목 수	면제 기준
일어일문학과	석사 2	지도교수와 협의 후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보고서 제출 시 시험 면제
	박사 4	①KCI 등재지에 단독논문 1편 게재 시 시험 면제 ②KCI 등재지에 제1저자로서 논문 1편 게재 시 시험 면제(지도교수와 공동) ③KCI 등재지에 제1저자, 교신저자로서 논문 2편 게재 시 시험 면제 (지도교수 외의 연구자와 공동)

제9조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)

- 석사과정생의 경우 전공 18학점 이수 후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- 박사과정생의 경우 전공 27학점 이수 후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- 종합학력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진행하며,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이다.

제10조(외국어시험 과목)

- 외국어시험 공지 및 일정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응시한다.
- 외국어시험 과목은 내국인 학생은 영어 혹은 일본어, 외국인 학생은 영어, 일본어, 한국어 중 1과목을 선택한다.
- 공인어학 성적 및 해외유학(연수)에 의한 면제는 내국인 학생에 한하며,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신청한다.
- 공인어학 성적에 의해 면제 가능한 언어는 다음과 같다.
①석사과정은 영어, 독어, 불어, 중어, 일어, 노어, 서반아어이다.
②박사과정은 영어, 독어, 불어, 중어, 일어, 한문, 노어, 서반아어이다.
- 해외유학(연수)에 의해 면제 가능한 언어는 다음과 같다.
①석사과정은 영어, 독어, 불어, 중어, 일어, 노어, 서반아어이다.
②박사과정은 영어, 독어, 불어, 중어, 일어, 한문, 노어, 서반아어이다.

제6장 학위과정

제11조(석·박사학위 과정 선택)

- 석·박사학위의 취득을 위해서는 학위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석사과정에서는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연구보고서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2.10.>
- 석사학위 과정생은 전공 24학점, 연구지도 9학점 이수, 외국어 시험 통과(공인어학 시험 성적 등), 예비발표 1회를 한 후 학위논문 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.
- 박사학위 과정생은 전공 36학점, 연구지도 9학점 이수, 외국어 시험 통과(공인어학 시험 성적 등), 한국연구 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2편 이상 등재, 예비발표 1회를 한 후 학위논문 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[제목개정 251210]

제12조(석사학위 과정의 변경)

1. 학위취득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.
2. 단, 사유서를 첨부한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.

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제13조(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) 학위논문 심사와 관련한 연구계획서는 매 학기 지도교수에게 제출하며, 지도교수 와의 면담을 통해 논문지도를 받는다. <개정 2025.12.10.>

제14조(예비발표)

1. 학위논문 심사 신청 이전에 예비발표를 진행한다. <개정 2025.12.10.>
2. 예비발표의 신청은 반드시 지도교수와 협의한 후 진행한다.
3. 예비발표는 1학기 기준 4월 둘째~셋째 주, 2학기 기준 10월 둘째~셋째 주에 진행하며, 예비발표 일주일 전 까지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한다.
4. 예비발표 합격 여부 판정은 심사위원장이 우선한다. <신설 2025.12.10.>
5. 예비발표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. <신설 2025.12.10.>

제15조(논문심사위원회)

1. 석사과정생의 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한다.
2. 박사과정생의 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며, 외부 논문심사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.

제16조(심사절차)

1.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의 최종 합격 여부 판정은 심사위원장이 우선한다. <개정 2025.12.10.>
2. <삭제 2025.12.10.>
3. 연구보고서는 심사 결과 총 2회 불합격 판정 시 학위논문에 준하여 ‘수료’로 인정한다. <개정 2025.12.10.>

[제목개정 2025.12.10.]

제17조(논문 제출)

1. 학위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의 제본분과 국문 파일을 일어일문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2.10.>
2. 학위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의 제본분은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한다. <개정 2025.12.10.>

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

제18조(의사결정 방식) 학과 운영위원회는 주임교수가 주최하며, 전체 교수 1/2 이상의 참석(위임 포함)과 참석 교수 2/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부 칙(2018.3.2.)

제1조(적용) 본 내규에 적용되지 않거나 새로운 사안이 있을 경우 학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본 내규에 추가한다.

제2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18년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.